

코로나19 관련 거창군 7차 서면 브리핑

< 2020. 3. 3.(화) 11:30 >

1. 거창군 발생현황

3월 3일(화) 11시 기준, 확진자는 총 11명임(남 4, 여 7)

○ 3. 3.(화) 11시 기준 우리군 추가 확진자 없음

- 3. 3.(화) 11시 기준 경상남도 확진자 62명임

○ 금일 기준 검사자는 총 168명으로 확진자 11명, 음성판정 142명, 검사 중 15명임

- 확진자의 접촉자 수는 77명으로 자가격리중이며, 증상 없음

-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11명 중 10명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, 1명은 대구 신천지교회 교육생임

감염경로에 대한 조치사항

○ 우리군은 감염경로가 비교적 명확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신도 전원 검사 완료

○ 거창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도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도록 안내(3. 2)

2. 거창 11번 확진자 상황 및 조치사항

거창 11번(경남 64) 확진자

○ 거창에 주소를 두고, 대구에서 생활하는 대구 신천지 교육생임

○ 이동동선

- 2. 18.(화) 오전 8시 30분에서 14시까지 대구 신천지 교육센터 방문

- 2. 19.(수) 대구 큰아버지댁에서 머무름
- 2. 20.(목) 16시경 대구서부정류장에서 거창고속(경남70아 9283) 버스를 타고 16시 54분경 거창시외버스터미널 도착. 17시 5분경 거창읍 더무그 빵집 방문 후 도보로 자택 이동
- 2. 21.(금) 13시 32분경 도보로 다이소 거창대동점 방문
- 2. 22.(금) ~ 2. 24(월) 자택에 머무름
- 2. 25.(화) 12시 55분경 세종약국 방문. 13시경 만물식자재마트 방문
- 2. 26.(수) ~ 2. 27.(목) 자택에 머무름
- 2. 28.(금) 18시 50분경 보건소를 방문(본인이 대구 신천지 교육생임을 숨김.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 후 자택 귀가)
- 2. 29.(토) 대구시청에서 신천지 교육생이라는 통보를 받음. 보건소를 재방문하게 한 후 검사의뢰
- 3. 1.(일) 검사 의뢰 이후에는 자가격리 조치
- 3. 2(월) 7시 30분경 확진 통보 12시경 마산의료원으로 이송 입원 조치
- 현재 확진자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
- 접촉자는 자가 격리하였으며,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영업점은 임시 폐쇄하고, 확진자 가정 및 관련 영업점은 방역을 완료하였음

3.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현황

- 자가격리자는 77명이며, 생필품 요구자에게 비상식량세트 전달
 - 현재까지 비상식량세트 36세대(생필품 8, 적십자 구호물품 28), 마스크 53명 389개 전달
- 1일 2회 지정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 여부, 호흡기 증상 여부, 자가격리 생활수칙 설명, 생필품·의약품 지원여부 등

4. 공적판매소 마스크 판매현황 : 21,200개 판매

- 농협 판매 : 하나로마트 16개소
 - 3. 2.(월)까지 12,200개 입고되었으나, 전량 판매
- 우체국 판매 : 우체국 12개소
 - 3. 2.(월)까지 9,000개 입고되었으나, 전량 판매
 - ※ 공적판매 대책회의[3. 3.(화) 10:30], 군수, 군의회 의장, 농협 거창군지부장, 우체국장, 남거창농협조합장 등

5. 거창 신천지 교회 신도 및 교육생 선별진료 안내

- 안내대상 : 61명(신도 51, 교육생 10) ※ 2명 기검사
 - 거창 80명(신도 63, 교육생 17) 중 타지역 포함 예매 미참석자 19명(신도 12, 교육생 7) ※ 3. 2.(월) 28명 검사
- 3월 2일 거창 신천지교회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3. 2 ~ 3. 3, 이틀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
- 원하는 시간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

6. 코로나19 관련 달라지는 사항

- 전국 유치원과 초·중·고 개학 3주 연기 : 개학 2020. 3. 23.
-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
 - 최대 5일, 50만원 자녀 돌봄비용 지원
- 전통·공설시장 ‘착한 임대료 운동’ 동참
 -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, 가조 및 신원공설시장 임대료 감면
-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한 영업점 등
 - 지방세 기한연장·징수유예 등 : 6개월(최대 1년)
- 코로나19 격리(입원)자 생활비 지원 : 격리자 급식비, 식품비 등